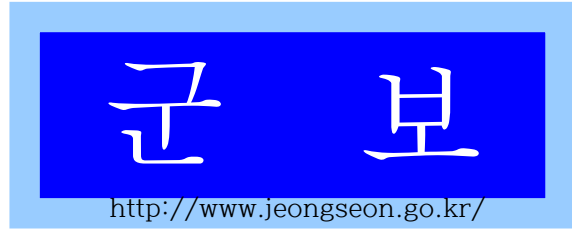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54호 2021. 2. 17.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146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7호선) 실시계획인가(폐지) 공람·공고.....2
- 정선군 공고 제2021-149호 정선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4
- 정선군 공고 제2021-185호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20
- 정선군 공고 제2021-189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공고.....3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146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7호선) 실시계획인가(폐지) 공람·공고

1. 정선군고시 제2019-229호(2019. 11. 01)로 최초 인가 고시된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7호선) 사업에 대하여 당초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폐지 공람·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0일

정 선 군 수

가. 사업위치

-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67-4번지 일원

나. 폐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 : 소로3-17호선) 사업
- 명 칭 : 신동 소3-17호선(구함백중고) 소교량 설치사업

다. 폐지 실시계획인가사업 현황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 폐지	비 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연장·폭원	
도로	소로3-17호선	L=442.0m, B=6.0m	L=40.8m, B=6.0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공람기간 : 2021. 2. 10 ~ 2021. 2. 24

바.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456)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아.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동읍 조동리	268	대	1,808	134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이*한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이*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대			
2	“	267-1	대	522	7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웅			
						서울 동대문구 현저동	이*규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이*한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이*한			
3	“	267-4	철	1,347	30	-	국토교통부			
계		3필지		3,677	238					

정선군 공고 제2021-149호

정선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공간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갱신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용하고, 공간정보체계 통합관리, 응용 프로그램 개발 등 공간정보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요인(신설, 변경, 폐기 등)이 발생 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안 제8조)
- 도로기반시설물의 공사 시 사업 준공 전 갱신된 전산파일(도면)과 전문기관의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공문을 첨부하여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를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공간정보 갱신을 위한 비용(측량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성과심사비 등)을 사업비에 반영(안 제9조)
- 공간정보체계 대한 통합관리 구축을 주관하고, 상시 갱신체계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안 제10조)
-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안 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2. 4. ~ 2021. 2. 24.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민원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행정국 민원과

- 연락처 : 전화(033-560-2183), 팩스(033-560-2407)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조작,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도면 및 현황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4.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5.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건축물 등 지상·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6. “전담부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한다) 전체의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현업부서”란 시설물 등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활용하는 부서와 지형지물의 변화가 있는 개발업무 등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유관기관”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도시기준점”이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공공삼각점 및 공공수준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과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가공간정보정책에 따라 수정·갱신 할 수 있다.

제5조(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①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 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 지식 및 기술 습득
4.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 협력 및 교류

제7조(업무지정) ① 군수는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 가. 공간정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 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갱신
- 다.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라. 공간정보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 마. 도시기준점 설치 및 관리
- 바. 공간정보 자료 제공

2. 현업부서

- 가. 신규·수정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나.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를 기 반으로 설계

수행

다.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 전 전담부서와 협의 및 성과물(전산파일) 제출
라.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및 점검

- ② 계약부서는 현업부서의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서류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전산파일)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전산자료 등의 갱신) ①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요인(신설, 변경, 폐기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담부서에서는 각종 시설물 자료의 입력을 위해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③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준공도면 및 지하시설물도 등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변경 또는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사업 준공 전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갱신 된 전산파일(도면)과 전문기관의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공문을 첨부하여 별지 1호 서식의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를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관한 사업 추진 시 공간정보 갱신에 필요한 비용(측량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성과심사비 등)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공간정보 구축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성과물을 준공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자료의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 ④ 지하시설물도의 작성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따라야 하며, 신설·변경되는 시설물 등은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실측하여 정확한 위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법 제31조에 따라 군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에 대한 통합관리 구축을 주관하고, 상시 갱신체계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유관기관 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간정보체계 통합관리 기관인 군에 갱신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①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② 공간정보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고,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분(백업파일)을 제작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3조(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 ① 현업부서에서는 지형·지물이 변동되는 공사를 할 경우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전담부서는 상시 갱신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도시기준점을 매년 확인·관리하고 측량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후 그 성과를 전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목록정보 작성 및 유통) ① 군수는 군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정보와 자료를 공간정보유통망(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별지 2호서식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용 용도의 공공성
2. 개인 권리 침해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여부

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사용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즉시 자료를 폐기하거나 반납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 삭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 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모든 자료를 회수 할 수 있으며, 보안상 자료제공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

③ 공간정보 제공에 따른 이동식 저장장치 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제10조 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2.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이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9조(보안관리) ① 군수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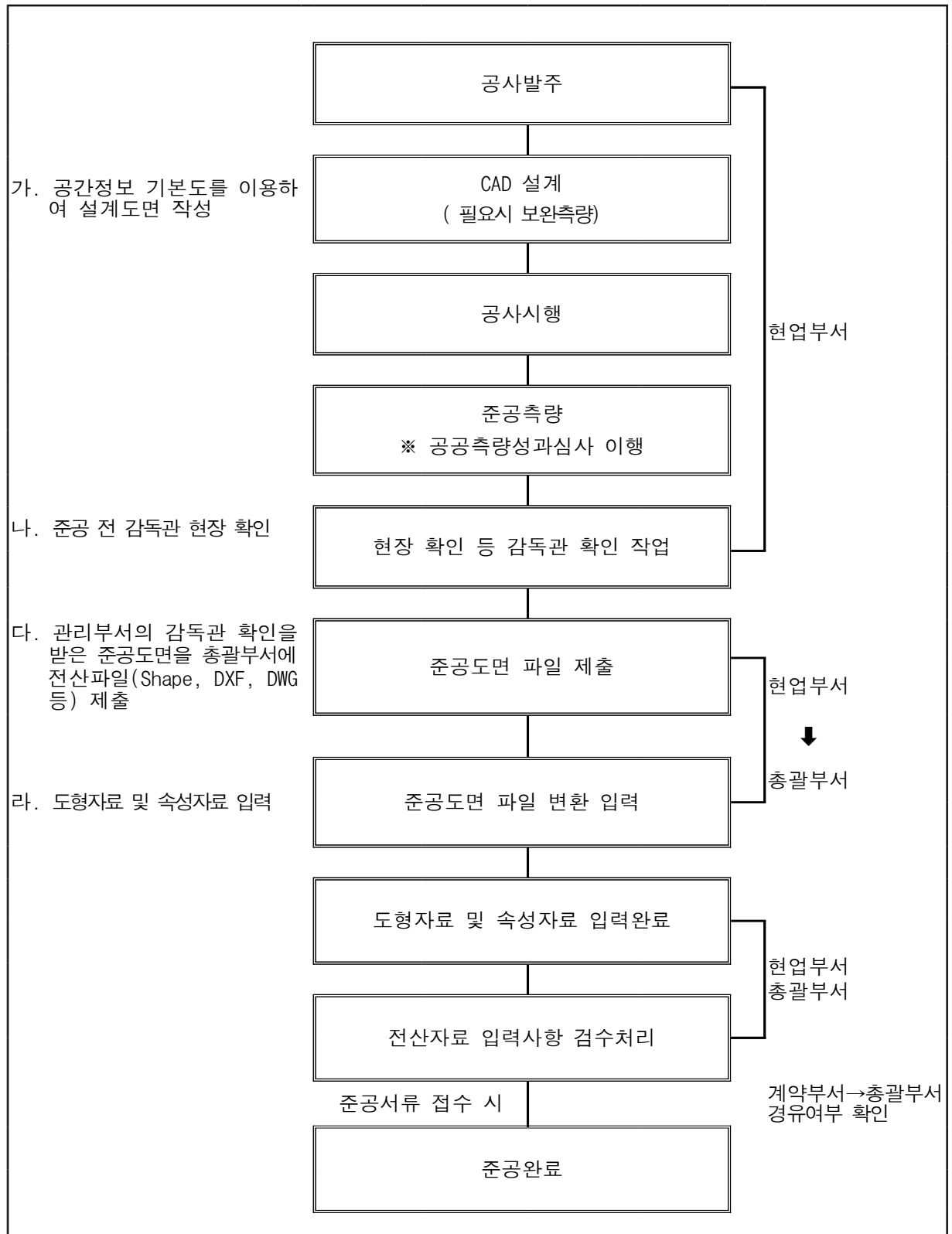
②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기반시설물 준공도면에 의한 공간정보 갱신 절차(제9조제5항 관련)



[별지 1호 서식]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

사업구분	신규(), 변경(), 증설(), 폐지(), 그 밖의()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업무담당자						
사업시공자						
공간정보 DB 작성	일 자		작성자		확인자	

「정선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업부서의 장 (인)

- 붙임 1. 전산파일(Shape, DWG 등)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

[별지 3호 서식]

공간정보 자료삭제 확인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
- 사업시공자(용역업체) :

○ 반출자료

○ 반출장소 및 기기

- 장소 ○○회사 (주소 :)
- 기 기 명 : ○○○가 사용하는 PC
- 작 업 자 : ○○과장 ○○○
- 연 락 처 :

상기와 같이 반출된 공간정보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삭제자 부서 :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부서 :	직급 :	성명 :	(서명)

정선군수 귀하

관계법령 발췌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지형·지물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지도 등의 판매가격)

-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치지도(數値地圖)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도엽(圖葉)당, 용량당 또는 계층구조별로 판매가격을 정할 것
 2. 수치지도의 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등 가공비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축척
 3. 규격
 4. 단위
 5. 판매가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생략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④ ~ ⑥ 생략

정선군 공고 제2021-185호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정부의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이 주민 주도형 상향식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선군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센터의 설치(안 제6조)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으로 정선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비용의 지원 및 정산(안 제5조 및 제6조)
 - 정선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센터 위탁운영(안 제7조)
 - 지원센터는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둔다.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2. 15.~ 2021. 3. 6.

5. 의견제출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군청) 기획관

☎ 전 화: 033-560-2246

☎ F A X : 033-560-2592

☎ E-mail : atse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지역주민과 군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농업인,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 군 소재 관련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농촌 활성화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해야 한다.

제5조(사무추진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농촌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무형의 지역자원 조사, 발굴, 분석, 연구 및 사업화
2.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컨설팅 및 지역역량 강화
3.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선정
4. 생활권 개선, 관광·체험마을 만들기, 신(新)활력 플러스, 청년활동 장려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농촌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협약의 체결내용·기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센터) ① 군수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중간지원조직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
2. 지역 역량강화사업 및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업무
3. 지역공동체,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농촌협약의 이행 및 실적 점검·반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귀촌, 평생학습 등의 분야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지원센터에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장은 군수가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당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업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센터의 장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직원의 채용·배치, 복무, 급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그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일한 수탁자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해마다 지원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추진위원회) ① 군수는 농촌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2. 활성화사업의 추진·지원범위 및 해당 실적의 점검·결과반영
3. 농촌협약의 기획, 신청, 이행, 완료, 사후관리 등의 전 과정
4. 모범사례의 발굴·수집 및 보급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군수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가.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중심지 및 권역 추진위원장

나. 농촌관광, 체험마을 및 신활력 플러스사업 대표

다.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준용)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

1.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및 환수
2.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절차·방법, 수탁자의 협약체결의무 및 지도·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정선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회피·기피, 위원의 수당·여비 등 지급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농촌 활성화업무”

관련 법령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 생산여건, 농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발췌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에는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를 둔다.

③ 센터의 위치는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에 둔다.

제8조(소장 등) ①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을 보좌하는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장의 직급과 그 소관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정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 농지관리
4. 농업인 및 그 단체 육성·지도·관리
5. 농촌관광·휴양사업 개발 및 지원
6. 식량작물 생산대책 및 지원관리
7. 양곡관리
8.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업무
9. 직접지불제 및 농업안정자금의 지원
10.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2. 축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가축 개량증식 및 양축농가 육성 업무
14. 가축 사양관리 및 방역기술 지도
15. 내수면어업 및 가축방역 업무
16.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
17. 농업인단체 및 전업농 육성지도
18. 강소농 육성,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업경영 업무
19. 농업인회관 관리 운영
20.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조사료 생산업무

21. 식량작물 재배·생산 등 기술지도
22.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23.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24.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추진
25. 과수재배 기술지도 및 교육
26.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27. 축산기술 시범사업, 곤충산업 육성 및 기술지도
2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정선군 공고 제2021-189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공고

정선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시행되는 『정선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17일

정 선 군 수

1. 모집기간: 2021. 2. 17.(수) ~ 2021. 3. 8.(월) 17:00까지
2. 모집인원: 21명(평가위원 수의 3배수,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인원)
-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 후 입찰참가자 추첨에 의해 최종 7명 위촉
3. 모집분야: 농촌계획, 지역(농촌)개발, 농촌경제, 농촌관광, 도시재생·계획 등
4. 역 할: 입찰 제안공모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평가
(정선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5.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 가. 자격요건(해당 심사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자)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
 -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 해당분야 전공자
 - 4)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5)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나. 제외대상
 -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자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 상의 경력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1. 2. 17.(수) ~ 2021. 3. 8.(월) 17:00까지

나. 접 수 처: 정선군청 기획관 미래전략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군청) 기획관 미래전략팀]

다. 접수방법: 공문(비공개), 우편, 방문접수, 이메일(atse1@korea.kr)

※ 이메일로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첨부, 팩스 등 타 방법 접수불가

라. 제출서류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붙임 1)

2)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 동의서 및 보안각서 각 1부(붙임 2~3)

3)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참여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일시: 2021. 3. 10.(수)까지 (변경 시 개별 통보)

나. 선정인원: 평가위원 7인

다. 선정방법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1 ~ 21번)를 부여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7개 번호) 수만큼 번호를 선택기입 주

첨

- 선정순위 ①다빈도 ②고령자 순서로 최종 선정 ③예비후보 2명

라. 선정결과 통보: 선정된 위원에게만 개별 유선 통지

8. 제안서 평가 예정일 및 장소

가. 평가예정일: 2021. 3. 11.(목) 13:00 (변경 시 개별 통보)

나. 장 소: 정선군청 2층 소회의실

※ 입찰 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 시,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안평가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9. 기타사항

-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봄.
-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정선군 기획관 미래전략팀(☎033-560-22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제출하신 서류는 『정선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명부 작성에만 활용됩니다.
- 마.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바. 평가위원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 평가수당을 지급합니다.
- 사. 상기 일정은 정선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보안각서 1부. 끝.

[서식 제1호]

정선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2021. . .

작성자: (인)

정선군수 귀하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처리 수집·이용 동의서

『정선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정선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학력, 이력, 자격사항, 계좌번호 등
- 선택항목: 없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공문, 서면, 전자우편, 팩스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정선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선정 및 자격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완료일까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등 · 선택항목 : 없음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선정 및 자격 적정성 확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일부터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완료일까지

정보주체는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_____ (인)

정보주체는 선택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에도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_____ (인)

정선군수 귀하

[서식 제3호]

보안각서

- 용 역 명: 정선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 발주부서: 정선군청 기획관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예비) 위원임을 대외에 알리지 않겠습니다.
2. 당해 평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 정보 등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 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떤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 .

서약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1. 등록신청서는 공문(비공개), 이메일, 방문접수,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033-560-2246, fax)033-560-2592
 - 주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정선군청) 기획관 미래전략팀 김동기 앞
 - E-Mail: atsel@korea.kr
2. 성명 ~ 직장현황은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분야는 명확하게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4. 학력현황은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고 졸업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졸자로서 평가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경력사항은 최종학교 졸업이후 평가대상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근무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를 기재합니다.
6. 자격증 보유현황은 해당자에 한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을 기재합니다.
7. 주요저서 및 논문은 최근 3년간 발표한 내용만 기재합니다.
8. (기타) 평가위원 활동경력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평가·심의·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9. 공통사항: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 사실 및 평가내용 등에 대하여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작성기준일은 2021. 2. 17.로 합니다.

※ 상기 각 사항에 대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가능